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4. . . (제 회)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산림경영활동 이력정보 수집 등의 내용으로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806호, 2023. 10. 31. 공포, 2024. 5.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산림경영활동 이력정보의 구체적인 범위와 유형을 정하는 한편(하위법령 제때마련)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 지정기준에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을 포함하도록 명시하여 해당 기준을 보완하고, 산림청장이 매년 측정·확정된 산림탄소흡수량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시기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과 연계하여 변경함으로써 법률 간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탄소흡수원 통계 작성 및 고도화를 위한 산림경영 활동의 이력정보의 구체적 범위 및 수집 절차 신설(안 제9조제3항~제5항 신설)

나. 산림청장이 매년 측정·확정된 산림탄소흡수량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시기 변경(안 제25조)

다.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 지정기준에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을 포함하도록 명시(안 제26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3호 신설)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 '24. 2. 27 ~ 4. 8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전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에 제3항 내지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산림청장이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④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이력정보의 구체적인 범위 및 유형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산림경영 활동에 대하여 시간적·공간적으로 변화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산림경영 활동 시행을 위해 조사한 산림 현황 자료
2. 산림경영 활동 대상지의 소유구분, 사업종류, 사업기간, 사업구역, 수종 등 기초자료
3. 산림경영 활동에 대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간정보
4. 그 밖에 산림청장이 정하는 산림경영 활동 이력정보 관리에 필요한 자료

⑤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산림경영

활동에 대한 산림사업을 시행한 경우 제4항의 이력정보를 사업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탄소흡수원 정보 체계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25조 중 “6월 20일”을 “3월 20일”로 한다.

제26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을 포함하고 있을 것

제26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을 포함하고 있을 것

부 칙

이 영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탄소흡수원 정보 및 통계) ①·② (생략) <u><신 설></u>	제9조(탄소흡수원 정보 및 통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산림청장이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u> ④ <u>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이력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 및 유형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산림경영 활동에 대하여 시간적·공간적으로 변화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u> 1. <u>산림경영 활동 시행을 위해 조사한 산림 현황 자료</u> 2. <u>산림경영 활동 대상지의 소유구분, 사업종류, 사업기간, 사업구역, 수종 등 기초자료</u> 3. <u>산림경영 활동에 대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간정보</u>
<u><신 설></u>	

<신 설>

제25조(산림탄소흡수량의 측정·보고·검증) 산림청장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측정·보고·검증된 산림탄소흡수량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후 매년 6월 2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의 지정 기준) ① 법 제3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대학원이나 대학원대학”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대학원이나 대학원대학을 말한다.

1.·2. (생 략)

<신 설>

4. 그 밖에 산림청장이 정하는 산림경영 활동 이력정보 관리에 필요한 자료

⑤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산림경영 활동에 대한 산림사업을 시행한 경우 제4항의 이력정보를 사업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탄소흡수원 정보 체계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25조(산림탄소흡수량의 측정·보고·검증) -----

-- 3월 20일-----
-----.

제26조(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의 지정 기준) ① -----

-----.

1.·2. (현행과 같음)

3.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②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고등학교나 고등기술학 교”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 두 충족하는 고등학교나 고등기 술학교를 말한다. 1. 2. (생 략) <u><신 설></u>	<u>교과목을 포함하고 있을 것</u> ② ----- ----- ----- ----- -----. 1. 2. (현행과 같음) <u>3.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u> <u>교과목을 포함하고 있을 것</u>
---	--

< 의안 소관 부서명 >

산림청 산림정책과	
연 락 처	(042) 481 - 4199